

교직원복지및직무역량개발지원규정

제정 2013.03.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송정보대학(이하 “본 대학”이라 한다.) 교직원의 복지증진 및 직무능력개발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대학의 생산성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 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본 대학의 교직원으로 한다.

제3조(복지의 종류 및 지급기준) ①본 대학 교직원을 위한 복지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교직원 본인 및 직계자녀의 본 대학 및 우송대학교 입학시 등록금 지원
2. 교직원 직계자녀의 위 제1호 이외의 대학 입학시 등록금 지원
3. 교직원 직계자녀의 중·고등학교 교육비 보조
4. 교직원 체력단련 지원
5. 우송대학교 공자아카데미 및 어학원, IT교육센터 교육 지원
6. 장기근속자 표창 및 포상
7. 교직원 공로포상자에 대한 표창 및 포상
8. 정년퇴임 예정 교직원에 대한 표창 및 포상
9. 회계 관련 직원 재정보증보험 가입
10. 교직원 출장시 철도이용할인 지원
11. 교직원 동·하계 연수 지원
12. 교직원 대전문화예술의전당 공연료 할인 지원(법인회원 가입)
13.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복지 지원

②제1항 각 호에 대한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제1호에 대한 지급기준은 장학규정에 의한다.
2. 제2호내지제3호에 대한 지급기준은 교직원수당등에관한규정에 의한다.
3. 교직원이 우송스포츠센터 이용시 할인혜택을 준다.
4. 교직원이 우송대학교 솔스포렉스 이용시 이용금액의 일부를 지원한다.
5. 교직원이 우송대학교 공자아카데미 이용시 이용금액 일부를 지원한다.
6. 제6호내지제7호에 대한 지급기준 및 지급시기는 교직원포상규정에 의한다.
7. 제9호에 대하여는 매 회계연도마다 전액을 지원한다.
8. 기타 각 호에 대한 지급기준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4조(직무역량개발의 종류) ①본 대학 교직원을 위한 직무역량개발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직원의 서비스 매너 및 인성교육 지원
2. 교직원의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교육 지원
3. 교직원의 직무관련 교육훈련 지원
4. 교원의 직무관련 학술대회 지원
5.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지원

②제1항 각 호에 대한 지원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제4호에 대한 지원은 연 2회에 한하여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여비를 지원한다.
2. 제1호내지제3호와 제5호에 대한 지원기준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총장이 정한다.

제5조(보칙)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